

※ 이 상품요약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무 배 당 A I A
안 심 + 경 영 인 정 기 보 험
(해 약 환 급 금 일 부 지 급 형)
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무배당 AIA 안심+ 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p>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p>
<p>①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1형(간편심사형)과 2형(일반심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상품의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이 상품의 2형(일반심사형)과 같은 유사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②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상승하는 체증형 구조로, 계약일부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이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되어, 사망보험금이 증가됩니다.</p> <p>③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의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해당법인에서 재직중인"CEO(최고 경영자). 등기임원 및 일반임원"으로 합니다.</p> <p>※ 용어의 정의 및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무엇인가요?</p>			
<p>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계약일부 5년 미만 기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p> <p>②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계약이 계약일부 3년 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3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5년 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5년 경과 계약해당일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표준형”과 같습니다.</p> <p>③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율)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되었으며, 본 상품과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p> <p>④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형” 상품과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p> <p>(예시) [기준 : 남자 50세, 90세만기, 전기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p> <p><input type="checkbox"/> 1형 (간편심사형)</p> <p>(1) 납입보험료 비교</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보험종류</td> <td style="width: 33%;">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td> <td style="width: 33%;">표준형</td> </tr> </table>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무)AIA안심+ 경영인 정기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503,000	516,000
합계보험료	503,000	516,000

(2) 해약환급금 및 해약환급률 비교

(단위 :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약환급금
1년	6,036,000	0	0.0%	6,192,000	1,959,000	31.6%
2년	12,072,000	0	0.0%	12,384,000	7,310,000	59.0%
3년	18,108,000	6,379,000	35.2%	18,576,000	12,758,000	68.6%
5년	30,180,000	24,230,000	80.2%	30,960,000	24,230,000	78.2%
7년	42,252,000	36,533,000	86.4%	43,344,000	36,533,000	84.2%
10년	60,360,000	55,344,000	91.6%	61,920,000	55,344,000	89.3%
15년	90,540,000	77,087,000	85.1%	92,880,000	77,087,000	82.9%
20년	120,720,000	96,439,000	79.8%	123,840,000	96,439,000	77.8%
30년	181,080,000	114,864,000	63.4%	185,760,000	114,864,000	61.8%
40년	241,440,000	0	0.0%	247,680,000	0	0.0%

※ 상기 해약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 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2형 (일반심사형)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무)AIA안심+ 경영인 정기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442,000	453,000
합계보험료	442,000	453,000

(2) 해약환급금 및 해약환급률 비교

(단위 :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약환급금
1년	5,304,000	0	0.0%	5,436,000	1,611,000	29.6%
2년	10,608,000	0	0.0%	10,872,000	6,186,000	56.8%
3년	15,912,000	5,460,500	34.3%	16,308,000	10,921,000	66.9%
5년	26,520,000	20,901,000	78.8%	27,180,000	20,901,000	76.8%


7년	37,128,000	31,615,000	85.1%	38,052,000	31,615,000	83.0%
10년	53,040,000	47,978,000	90.4%	54,360,000	47,978,000	88.2%
15년	79,560,000	67,006,000	84.2%	81,540,000	67,006,000	82.1%
20년	106,080,000	84,068,000	79.2%	108,720,000	84,068,000	77.3%
30년	159,120,000	99,566,000	62.5%	163,080,000	99,566,000	61.0%
40년	212,160,000	0	0.0%	217,440,000	0	0.0%

- ※ 상기 해약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 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관리, 치료지원, 질병관리교육, 가족지원 등 토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AIA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AIA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으며,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p>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p>
---	--

◆ 일반심사상품과의 보험료 비교

이 상품의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이 상품의 2형(일반심사형)과 같은 유사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정기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형 (간편심사형)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정기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형 (일반심사형)				
상품구분		1형 (간편심사형)	2형 (일반심사형)				
보장 내용	계약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다만,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부터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이후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채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채증한 금액				
계약승낙여부		일반심사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비교 (보장 내용과 기준 동일)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40세	517,000원	350,000원	40세	450,000원	292,000원
		50세	503,000원	339,000원	50세	442,000원	287,000원
		60세	485,000원	324,000원	60세	431,000원	278,000원
		·기준: [90세 만기, 전기납, 월납] -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형(간편심사형) 1억원		·기준: [90세 만기, 전기납, 월납] -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형(일반심사형) 1억원			

※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기 예시된 보장내용은 상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_보험금 지급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형 구분	1형 (간편심사형) 2형 (일반심사형)	순수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종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형 (간편심사형)	90세만기	전기납	30세~70세	월납
2형 (일반심사형)			20세~70세	

3. 가입한도

주계약의 가입한도는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 10억원,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 30억원입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AIA 안심+ 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피보험자의 나이,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건강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 주계약: 무배당 AIA 안심+ 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형(간편심사형)
 - + 선지급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주계약: 무배당 AIA 안심+ 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형(일반심사형)
 - + 선지급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내용

다음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계약

① 1형(간편심사형)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부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다만, 계약일부 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 다)
		계약일부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이후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약 해 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씩 정액 체증한 금액

② 2형(일반심사형)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부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부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이후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 계약 해 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씩 정액 체증한 금액

- ※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선지급서비스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선지급 사망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 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

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2형(일반심사형)에 한함]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약면책조건을 부가하고, 특약 면책기간 중 약관에서 지정한 각호의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5)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금액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연금형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연금지급형태 >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상속연금형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이 특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

- 금도 변경됩니다.
-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과 확정연금형에서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라 함은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 특약으로 납입(전환)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 이 특약의 연금액 및 계약자적립액은 특약 전환 당시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며, 특약 전환 당시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이 연금인 경우 이 특약의 연금사망률은 전환전 계약 가입시점의 연금 사망률을 적용합니다.

(6)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장애인의 범위)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계약 전 알릴의무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간편심사상품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상품 가입을 희망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가입하고 간편심사상품의 계약 무효를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3)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부지급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료 산출기초

1. 보험료 적용이율

보험료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데, 이 할인을 보험료 적용이율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험료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보험료 적용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4.0%, 10년 초과 연복리 0.25%입니다.

2.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310	0.000200
40세	0.000630	0.000470
60세	0.003570	0.001420

구분	간편고지 사망률	
	남자	여자
40세	0.000760	0.000690
50세	0.001730	0.001190
60세	0.005420	0.002350

3. 적용해지율에 관한 사항

적용해지율이란,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해지율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0.1%~22.0% 입니다.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등 안내

우리 AIA생명 무배당 AIA 안심+경영인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1) 1형 (간편심사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90세만기 전기납, 월납, 40세, 남자 (단위: 원)

구분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51,000	0	0.0%	1,050,000	0	0.0%
6개월	3,102,000	0	0.0%	2,100,000	0	0.0%
9개월	4,653,000	0	0.0%	3,150,000	0	0.0%
1년	6,204,000	0	0.0%	4,200,000	0	0.0%
2년	12,408,000	0	0.0%	8,400,000	0	0.0%
3년	18,612,000	6,722,000	36.1%	12,600,000	4,358,000	34.5%
5년	31,020,000	25,592,000	82.5%	21,000,000	16,617,000	79.1%
7년	43,428,000	38,649,000	88.9%	29,400,000	25,106,000	85.3%
10년	62,040,000	58,715,000	94.6%	42,000,000	38,119,000	90.7%
15년	93,060,000	82,806,000	88.9%	63,000,000	53,729,000	85.2%
20년	124,080,000	106,200,000	85.5%	84,000,000	68,937,000	82.0%
30년	186,120,000	145,854,000	78.3%	126,000,000	96,227,000	76.3%

구분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40년	248,160,000	156,036,000	62.8%	168,000,000	106,984,000	63.6%
50년	310,200,000	0	0.0%	210,000,000	0	0.0%

(2) 2형(일반심사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90세만기 전기납, 월납, 40세, 남자 (단위: 원)

구분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350,000	0	0.0%	876,000	0	0.0%
6개월	2,700,000	0	0.0%	1,752,000	0	0.0%
9개월	4,050,000	0	0.0%	2,628,000	0	0.0%
1년	5,400,000	0	0.0%	3,504,000	0	0.0%
2년	10,800,000	0	0.0%	7,008,000	0	0.0%
3년	16,200,000	5,748,000	35.4%	10,512,000	3,540,500	33.6%
5년	27,000,000	21,951,000	81.3%	17,520,000	13,575,000	77.4%
7년	37,800,000	33,183,000	87.7%	24,528,000	20,548,000	83.7%
10년	54,000,000	50,413,000	93.3%	35,040,000	31,217,000	89.0%
15년	81,000,000	71,069,000	87.7%	52,560,000	44,037,000	83.7%
20년	108,000,000	91,236,000	84.4%	70,080,000	56,628,000	80.8%
30년	162,000,000	126,052,000	77.8%	105,120,000	79,680,000	75.7%
40년	216,000,000	134,129,000	62.0%	140,160,000	88,818,000	63.3%
50년	270,000,000	0	0.0%	175,200,000	0	0.0%

- (주) 1.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p>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를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p> <p>*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p>

(기준: 남자/여자, 40세)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무배당 AIA 안심+ 경영인 정기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형(간편심사형)	90세	50년	남자	141.9%	10,000 만원
				여자	144.4%	
	2형(일반심사형)	90세	50년	남자	129.8%	10,000 만원
				여자	124.4%	

* 무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 및 유병자보험 등 상품 자체가 비표준체 대상 상품의 경우, 표준체상품 대비 보험가격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